

공 시 송 달 공 고

국유재산법 제32조(사용료)에 따라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 등을 체납하여 국유재산법 제73조 제2항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과 동법 제41조 제1항에 의거 예금을 압류하고 예금압류 통지 및 등본을 국세징수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등기송달(총 2회) 하였으나,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,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1. 제 목: 국유재산 사용료 등 체납자 예금압류 공시송달

2. 근거법규

- 가. 국유재산법 제32조(사용료)
- 나. 국유재산법 제73조 제2항(연체료 등의 징수)
- 다.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(압류)
- 라.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(채권의 압류 절차)
- 마. 국세징수법 제29조 제1항(압류조서)
- 바. 국세기본법 제11조(공시송달)
- 사.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(송달)
- 아.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(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)

3. 공고기간: 2019. 5.30. ~ 2019. 6.13.(15일간)

4. 공고대상자 및 내역

(단위: 원)

체 납 자		체 납 내 역		
성 명	주 소	징수결의번호	부과금액	징수과목명
(주)에*트로닉*에스	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번영로 8**, *층	191008524외 5건	5,258,830	국유재산 사용료 등

5. 공고기간 내에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, 국유재산 사용료 등을 납부하였을 경우 설정된 예금압류가 해지됨을 알려드립니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[☎(063)240-3587]로 문의 바랍니다.

2019년 5월 30일

전북지방우정청장